

● 제315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5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형 키즈카페(시립1호점) 운영 및 관리 사무의
민간위탁 동의안
검 토 보 고 서

2022. 11. 24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

의안번호 354

I. 동의안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출일 : 2022. 10. 17.
- 다. 회부일 : 2022. 10. 21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「서울형 키즈카페(시립1호점)」는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,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·오락,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전용시설(사회복지시설)임.
- 서울형 키즈카페(시립1호점)를 조성하여 아동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놀이시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도록 놀이공간 제공하여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- 아동의 안전한 놀이 및 돌봄을 비롯하여 아동 대상 프로그램 진행 등 놀이문화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사업개요

- 기관명 : 서울형 키즈카페(시립1호점) ※가칭
- 위 치 : 동작구 노량진로 10(스페이스 살림 내)
- 규 모 : 면적 387.15m²
 - 이용 아동 및 종사자 정원 : 아동 42명/ 종사자 6명
- 소요예산('23) : 305백만원(민간위탁금, 민간위탁사업비) ※5개월분
 - 인건비 115백만원/ 운영·사업비 70백만원/ 기자재구입비 120백만원
- 위탁기간 : 5년(2023.6. ~ 2028.6.)※예정
- 위탁사무 : 「서울형 키즈카페(시립1호점)」 운영·관리
 -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한 놀이공간 운영
 - 적정한 이용비용 책정을 통해 키즈카페 이용에 대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전담인력 등 활용하여 돌봄·놀이 복합시설로 운영
 - 조직·인사관리, 예산집행 및 회계·계약, 물품 및 재산관리, 시설물 유지관리

○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
- '22년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: 적정('22.10.6.)

2)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아동복지법 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
-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7조(지원사업)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○ 필요성

- 계절·미세먼지, 경제적 부담 없는 놀이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를 서울 전역에 추진중이며, 서울형 키즈카페(시립1호점)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보호자 및 키즈카페 종사자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과 함께 아동의 주도적인 놀이가 가능하도록 지원 예정
- 기존 아동 대상 공공 놀이시설은 부족하거나 환경의 제약이 있고, 민간키즈카페는 이용시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아동의 놀이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어 서울시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을 통해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지원하고자 함
- 서울형 키즈카페 관리·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아동특성에 대한 이해도, 놀이 및 돌봄에 대한 기술·지식과 경험을

보유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
민간위탁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[아동복지법]

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]

제7조(지원사업) (제1항 제1호.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)

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

[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]

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[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]

제6조(관리·운영 위탁)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2023년 예산 편성 요구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박지향)

1 동의안의 개요

- 본 동의안은 ‘서울형 키즈카페(시립1호점)’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“「민간위탁조례」”라 한다) 제4조의3제1항¹⁾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임.
- 시장이 민간위탁하려는 서울형 키즈카페(시립1호점)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무 내용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프로그램 및 놀이 공간 운영과 예신집행 및 회계·계약, 시설물유지와 재산관리 등임.

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

-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,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할 필요가 있음.
- 「지방자치법」²⁾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

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①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3.25, 2021.12.30>

2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~② (생략)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

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「아동복지법」 제53조³⁾에서 ‘지방자치단체장은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⁴⁾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’라고 규정하고 있고,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 제7조제1항제1호⁵⁾ 및 제7조의2제1항⁶⁾에 따라 ‘시장은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’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, 동 키즈카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음.

○ 또한 「민간위탁조례」 제4조⁷⁾ 및 제6조⁸⁾ 등에서는 ‘특수한 전문지식이나

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3) 「아동복지법」 제53조(아동전용시설의 설치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4)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(아동복지시설의 종류)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6. 3. 22., 2017. 10. 24., 2019. 1. 15., 2021. 12. 21.>

1.~6. (생략)

7. 아동전용시설 : 어린이공원, 어린이놀이터, 아동회관, 체육·연극·영화·과학 실험전시 시설, 아동휴게숙박시설,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·오락,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8.~12. (생략)

5)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 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

6)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 제7조의2(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.

7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<개정 2009. 7. 30., 2012. 12. 31., 2014. 5. 14.>

1.~2. (생략)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(생략)

기술을 요하는 사무'로서 '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'고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전한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를 비롯하여 아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놀이 및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성을 요구하는 키즈카페의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
-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 제7조제2항⁹⁾에서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바, 서울형 키즈카페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 본 위탁시설은 사회복지시설¹⁰⁾로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3항¹¹⁾에 따라 위탁일로부터 5년간 위탁하게 됨.

② 삭제 <2014. 5. 14.>

8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9. 3. 18., 2009. 7. 30., 2014. 5. 14., 2019. 9. 26.>

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8.~9. (생략)

9)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 제7조(지원사업)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10)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8.5.3, 2020.1.9>

1. "사회복지시설"이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서 설치하는 노인·장애인·여성·아동복지 관련 시설, 사회복지관과 노숙인시설 등을 말한다.

11)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③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, 위탁기간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5.3>

3 민간위탁 필요성 검토

- 행정안전부¹²⁾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전체 어린이놀이기구 10,302개 중 6,137개(60%)는 주택단지 즉 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에 제약과 기존 민간 키즈카페는 비싼 이용요금으로 시설 이용에 제한이 있어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아동의 놀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놀이공간 마련에 대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음.
- 서울특별시는 '22년도부터 자치구에 키즈카페를 설치하기 위해 설치비 및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지만 자치구 유휴공간 부족으로 인한 설치 공간 제약으로 중소형 시설이 다수임. 또한 직영으로 시립 서울형 키즈카페를 운영시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최소 5~6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며 조직규모 팽창 등 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.
-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직접 유휴공간을 발굴하여 서울 시민 전체가 이용하기 쉽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에 대한 선도적 역할과 다양한 현장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법인·단체 등을 활용하여 아동의 놀이권 보장 및 안전한 보호를 위한 전문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12) 행정안전부 '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시스템', 놀이시설통계, 서울

4 종합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「민간위탁조례」 제4조의3제1항13)에 따라 ‘서울형 키즈카페(시립1호점)’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추진하기 위해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 제7조제1항제1호14)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등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시장의 소관 사무로 정하고 있고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 제7조제2항15)에서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 제7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르면 기존 민간시설과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명칭 변경 또는 입지 결정 시 신중히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.
 - 서울연구원이 수행한 서울형 키즈카페(시립형) 적정 요금 산출 연구16)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과 입지 선정 등 기존 민간시설과

13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①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 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,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3.25, 2021.12.30>

14)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 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어린이놀이시설 등 아동 놀이공간 조성사업

15) 「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」 제7조(지원사업)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법인,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갈등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의 주의가 필요해 보임.

- 또한 키즈카페에서 계속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¹⁷⁾ 놀이기구 등 키즈카페에 설치된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등 소관부서와 위탁기관은 시설의 관리감독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.

16) 서울시 상시제안 연구과제 검토의견 송부, 서울연구원 연구지원팀-1426 (2022.8.29.)

17) 키즈카페 안전사고 1500여건 중 문체부 보고 사례 단 3건, 전소정 기자, 민주신문, 2022.10.19.